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청의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생명심사국의 차세대에너지심사과를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변경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화학생명심사국에 2027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신설하며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정경쟁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27일에서 2026년 7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, 부처 또는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정원 5명(5급 5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4급 또는 5급 5명)하는 한편,

산업재산정보법 제정·시행 및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, 산업재산보호협력국, 산업재산정보국, 기계금속심사국, 반도체심사추진단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,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국,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4. 6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항제1호 중 “특허정보”를 “산업재산 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특허분석”을 “산업재산 정보 분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산업재산권 진단기관”을 “산업재산진단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특허 정보”를 “산업재산 정보”로, ““특허”를 ““산업재산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5호 중 “특허”를 “산업재산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에 제5호의2, 제5호의3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산업재산권 보호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·제공

5의3. 특허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

9의3.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

제9조제4항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기술디자인침해 단속 지원사업 운영

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각각 “산업재산”으로 하고, 제1호의2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 및 연구·개선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

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“산업재산”으로, “작성·분석·종합”을 “기획·조사·작성·분석·보급·활용에 관한 총괄관리, 통계시스템의 구축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국내 산업재산권”을 “산업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, 제13호 및 제14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각각 “산업재산”으로 하며, 제14호 중 “외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”을 “국제협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“산업재산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6호 중 “산업재산권 정보화”를 “산업재산 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각각 “산업재산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1호의2 중 “산업재산권 데이터의 분석·활용 모델 개발”을 “산업재산 정보의 분석·활용 시스템 구축·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1호의3부터 제2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·시행계획
의 수립·시행

1의4. 산업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·분석

2. 산업재산 정보화 기술의 연구개발, 분석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

4의2.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·가공 및 제공

21의3.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류정보와 연계에 관한 사항

21의4.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

21의5.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·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
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”을 각각
“산업재산 정보 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“정보화시
스템”을 각각 “산업재산 정보 시스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산업
재산권”을 “산업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정부통합전산센터
와”를 “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16. 산업재산의 출원, 심사, 등록, 심판,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
또는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
제10조제4항제17호 중 “산업재산권정보”를 “산업재산 정보”로 하고, 같
은 항 제18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“산업재산”으로, “조사·연구”를 “계획
의 수립·시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“산업
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산업재산권 관련”을
각각 “산업재산 정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“산업재
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산업재산권 데이터”를 “산업재산 정보
데이터베이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및 제12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각
각 “산업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
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3호,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
지,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,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산업재산
권”을 각각 “산업재산”으로 한다.

12의2.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, 서비스 및 소프

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

12의3.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

제14조제2항 중 “차세대에너지심사과”를 “이차전지소재심사과”로, “환경기술심사팀”을 “환경기술심사팀, 이차전지설계심사팀,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양극소재, 음극소재, 전극신소재, 전해질소재, 분리막소재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⑩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셀구조설계, 전극구조설계, 전극제법, 셀 주변장치 및 패키징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⑪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셀제어, 회로시스템, 충방전제어, 배터리순환관리 및 차세대전지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제15조제8항 중 “항공우주시스템, 정밀시험 및 운송기반”을 “항공우주시스템 및 정밀시험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증착공정 및 소자공정”을 “증착공정, 소자공정 및 플라즈마공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메모리회로 및 반도체 응용설계”를 “메모리회로, 반도체 응용설계 및 메모리소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기판제조, 패키지공정, 검사기술 및 기판가공”을 “인쇄회로기판,

패키지공정, 반도체계측, 반도체시험 및 패키지구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8항 중 “유기박막제조공정 및 유기소자적층공정”을 “유기박막제조공정, 유기소자적층 및 기판성막장치 공정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172”를 “177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826”을 “821”로 한다.

별표 9 가목1) 조직란 1)을 삭제하고, 같은 란 1) 1명(고위공무원단 1명)을 삭제하며, 같은 목 2) 조직란 2)을 삭제하고, 같은 란 2) 1명(3급 또는 4급 1명)을 삭제하며, 같은 목 3) 조직란 3)을 삭제하고, 같은 란 3) 1명(4급 1명)을 삭제한다.

부령 제42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4년 7월 27일”을 “2026년 7월 27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7항제1호·제2호·제13호·제14호·제15호의 개정규정, 제9조제3항제5호의 2의 개정규정, 제10조제3항제1호·제1호의2·제1호의3·제1호의4·제2호·제4호·제4호의2·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·제10호·제13호·제14호·제15호·제16호·제17호·제18호·제19호·제21호의 2·제21호의3·제21호의4·제21호의5의 개정규정, 제10조제4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·제16호·제17호·제18호의 개정규정, 제10조제5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·제12호·제12호의2·제12호의3·제13호의 개정규정, 제10조제7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11호·제12호·제13호의 개정규정, 제10조제9항제1호·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2027년 0월 00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차전지설계심사팀

장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이 분장한다.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5명(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)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5명(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)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산업재산정책국) ① ~ ⑥ (생 략)	제8조(산업재산정책국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 -----.
1. <u>특허정보</u> 활용을 통한 산업 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· 추진	1. <u>산업재산 정보</u> ----- ----- -----
2. <u>특허분석</u> 에 기반한 정부 연 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 · 시행	2. <u>산업재산 정보 분석</u> ----- ----- -----
3. ~ 12. (생 략)	3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<u>산업재산권 진단기관</u> 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	13. <u>산업재산진단기관</u> ----- -----
14. <u>특허 정보</u> 와 관련된 대용량 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(이하 “ <u>특허 빅데이터</u> ”라 한 다)의 분석·활용에 관한 계 획의 수립·시행	14. <u>산업재산 정보</u> ----- ----- --- “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 -----
15. <u>특허 빅데이터</u> 의 분석·활 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	15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16. (생 략)	16. (현행과 같음)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제9조(산업재산보호협력국) ① · ② (생 략)	제9조(산업재산보호협력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6. ~ 9의2. (생략)

<신설>

10. (생략)

④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삭제

9.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

10. · 11. (생략)

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10. (생략)

③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산업재산권 보호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·제공

5의3. 특허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

6. ~ 9의2. (현행과 같음)

9의3.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

10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9의2. 기술디자인침해 단속 지원사업 운영

10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⑨ (생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산업재산정보국) ①·② (생략)	제10조(산업재산정보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정책의 수립·총괄 및 조정	1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1의2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관련 법령·제도의 <u>운영</u>	1의2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 <u>운영 및 연구</u> · <u>개선</u>
<신설>	1의3. <u>산업재산</u> 정보의 관리 및 <u>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</u> · <u>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</u>
<신설>	1의4. <u>산업재산</u> 정보 수요 및 활용 <u>실태 조사·분석</u>
2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기술의 조사·연구·분석평가 및 표준화	2. <u>산업재산</u> 정보화 기술의 연구개발, 분석평가 및 표준화에 <u>관한 사항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<u>산업재산권</u> 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·분석·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·배포	4. <u>산업재산</u> ----- <u>기획·조사·작성·분석·보급·활용에 관한 총괄관리, 통계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 ---- --
<신설>	4의2. <u>산업재산</u> 정보의 수집· <u>가공 및 제공</u>

5. <u>국내 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관련 교육·홍보	5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6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·운영	6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 --
7. <u>산업재산권</u>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종합 및 조정	7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 --
8. <u>산업재산권</u> 관련 민원(국민제안을 포함한다) 제도의 총괄·운영	8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 -----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10. <u>산업재산권</u>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	10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11. · 12. 삭제	
13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·조정	13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14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	14. <u>산업재산</u> ----- <u>국제협력</u>
15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·개발 및 운영	15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 --
16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시스템의 해외 확산	16. <u>산업재산 정보</u> ----- -----
17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·조정	17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
18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·추진	18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 -----
19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	<삭 제>
20. · 21. (생략)	20. · 21. (현행과 같음)
21의2. <u>산업재산권</u> 데이터의 분석·활용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	21의2. <u>산업재산</u> 정보의 분석·활용 시스템 구축·운영 ----- -----
<신 설>	21의3. <u>산업재산</u> 분류정보와 다른 분류정보와 연계에 관한 사항
<신 설>	21의4. <u>산업재산</u>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
<신 설>	21의5. <u>산업재산</u> 정보의 이용·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
22. (생략)	22. (현행과 같음)
④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시스템 개발·운영 계획의 수립·조정	1. <u>산업재산</u> 정보 시스템 ----- -----
2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시스템의 연구·개발 및 운영	2. <u>산업재산</u> 정보 시스템----- -----
3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화시스템의	3. <u>산업재산</u> 정보 시스템-----

개발·운영과 관련된 외부용 역 관리	----- -----
4. <u>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 를 위한 기술조사·분석 및 평가</u>	4. <u>산업재산 정보 시스템</u> ----- ----- ----- --
5. <u>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</u>	5. <u>산업재산 정보 시스템</u> ----- ----- -----
6. <u>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</u>	6. <u>산업재산 정보 시스템</u> ----- -----
7.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<u>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 된 제도의 정비</u>	7. ----- <u>산업재산 정보 시스템</u> ----- -----
8. <u>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·유지 및 관리</u>	8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9. ~ 12. (생략)	9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<u>정부 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약의 및 조정</u>	13. ----- <u>국가 정보자원관리원과</u> ----- -----
14. · 15. (생략)	14. · 15. (현행과 같음)
16. <u>산업재산권 출원서류·등록 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 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</u>	16. <u>산업재산의 출원, 심사, 등 록, 심판, 재심 및 그 밖의 절 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 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 관의 운영</u>

17. <u>산업재산권정보</u>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	17. <u>산업재산 정보</u> ----- -----
18. <u>산업재산권</u> 관련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<u>조사·연구</u>	18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 <u>계획의 수립</u> <u>· 시행</u>
19. (생략)	19. (현행과 같음)
⑤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.
1. <u>산업재산권</u> 정보의 활용·보 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조정	1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2. <u>산업재산권</u> 관련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	2. <u>산업재산 정보</u> ----- ----- -----
3. <u>산업재산권</u> 관련 데이터베이 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운영 및 관리	3. <u>산업재산 정보</u> ----- ----- -----
4. <u>산업재산권</u> 관련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·운영 및 관리	4. <u>산업재산 정보</u> ----- -----
5. 삭 제	
6. <u>산업재산권</u> 공보의 생성·발 간 및 배포	6.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7. <u>산업재산권</u>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	7. <u>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</u> -----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국내외 <u>산업재산권</u> 관련 자 료의 수집·정리 및 보급	9. ---- <u>산업재산</u> ----- -----

10. · 11. (생략)

12.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의
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<신설>

<신설>

13.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관
리에 관한 사항

⑥ 삭제

⑦ 산업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방
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

2.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제도
의 운영

3.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서류
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

4. ~ 10. (생략)

11.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
담 및 안내

12. 산업재산권 출원서류 · 등록
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

13. 산업재산권 출원 · 등록에

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
12. 산업재산 검색시스템의 구
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2의2.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
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, 서비
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
구개발 지원

12의3.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의
개발 및 상용화 촉진

13. ----- 산업재산 -----

⑦ -----
-----.

1. 산업재산 -----

2. 산업재산 -----

3. 산업재산 -----

4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산업재산-----

12. 산업재산 -----

13. 산업재산 -----

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·초본
의 발급

14. (생 략)

⑧ (생 략)

⑨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
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산업재산권 국제출원에 대한
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

2.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관련
제도의 운영

3. ~ 11. (생 략)

제14조(화학생명심사국) ① (생
략)

② 화학생명심사국에 유기화학
심사과, 약품화학심사과, 기초
재료화학심사과, 차세대에너지
심사과, 고분자섬유심사과, 의
료기술심사과, 환경기술심사팀
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
로 보하고, 팀장은 과학기술서
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농
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
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
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
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

14. (현행과 같음)

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
-----.

1. 산업재산 -----

2. 산업재산 -----

3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화학생명심사국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이차전지소재

심사과-----

----- 환경기술심사팀,

이차전지설계심사팀, 이차전지

제어관리심사팀-----

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서서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⑥ 차세대에너지심사과장은 이차전지, 차세대전지, 광에너지, 에너지변환 및 연료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⑦ ~ ⑨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양극소재, 음극소재, 전극신소재, 전해질소재, 분리막소재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셀구조설계, 전극구조설계, 전극제법, 셀주변장치 및 패키징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⑪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셀제어, 회로시스템, 충방전제어, 배터리순환관리 및 차세대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·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

제15조(기계금속심사국) ① ~ ⑦
(생략)

⑧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조선해양시스템, 육상운송, 항공우주시스템, 정밀시험 및 운송기반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⑨·⑩ (생략)

제24조(반도체심사추진단) ①·②
(생략)

③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노광공정, 에칭공정, 증착공정 및 소자공정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④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반도체소자, 반도체회로, 메모리회로 및 반도체 응용설계 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사무를 분장한다.

제15조(기계금속심사국) ① ~ ⑦
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----- 항공우주시스템 및 정밀시험 -----

-----.

⑨·⑩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반도체심사추진단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증착공정,
소자공정 및 플라즈마공정 ---

-----.

④ -----
----- 메모리회로,
반도체 응용설계 및 메모리소자

-----.

⑤・⑥ (생략) ⑦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<u>기관제조, 패키지공정, 검사기술 및 기관가공</u> 분야의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 ⑧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<u>기관처리장치, 기관이송장치, 유기박막제조공정 및 유기소자적층공정</u> 분야의 특허출원・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	⑤・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<u>인쇄회로기관, 패키지공정, 반도체계측, 반도체시험 및 패키지구조</u> ----- ----- -----. ⑧ ----- ----- <u>유기박막제조공정, 유기소자적층 및 기관성막장치 공정</u> 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특허청 공무원 정원표(제19조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 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 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 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 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 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 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 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 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· ·	· · <u>172</u> <u>826</u> · ·	· · <u>177</u> <u>821</u> · ·	+5 -5